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일, 이성권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8.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 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3.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성권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사 임직원의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특혜나 비리 등으로 채용되거나 임용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면서 채용은 공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특혜나 비리채용에 대한 취소 처분 조항이 있지만, 취소 처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 시 그 효력이 합격·승진·임용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7제6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비위행위자의 합격·승진·임용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임용 당시로 소급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7 제6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 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은 <u>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u>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제5항에서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채용비위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에게 부정 채용자에 대한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취소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채용비위 행위자에 대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에 임용 당시로 소급효를 부여하여 취소처분의 효력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이는 「국가공무원법」¹⁾ 및 「지방공무원법」²⁾에서도 채용비위 관련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체계상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채용비위 방지와 채용과정상 부당하게 얻은 신분상 이익 박탈 등 부정채용자 엄중 제재를 위해서는 취소 처분 효력발생 시점을 합격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지방공기업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에 소급효가 적용되는 사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지방공기업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에 소급효가 적용되는
사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함(부칙 제2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u>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7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은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임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⑤ (생략) <u><신설></u>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5항에 따른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은 합격·승진·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u>
<u>⑥</u> (생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